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

2023. 2.

고 용 노 동 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목 차

I.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1
II.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3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5
2.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10
3. 적격 수급인의 산정	11
4.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13
5. 공사기간 연장 승인	13
6.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14
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5
8.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17
III. 건설현장 알아두기	19
IV. 질의회신	28
V. 주요서식	41

[별첨] 건설현장 위험요인별 자율점검표

I.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가. 필요성 및 배경

- (국제) 산업혁명 초기 계약자유의 원칙(시민법)에 따른 경제활동이 아동노동, 안전사고, 대량해고 등 사회문제 야기
 - 1830년대 공장·탄광 내 안전보건 규율법령을 시작으로 「공장법」 제정, 1970년대 미국·영국을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 * 시민법의 기본원리: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 근대민법의 수정: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위험책임의 원칙
- (국내) 1948년 대한민국헌법 제정 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 안전조치,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내용 규정
 - 1970년대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현장 기계설비의 대형화, 대규모 건설공사, 화학물질 대량취급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급증 → 안전보건 분야가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법 제정('81)
 - * 근로기준법('53) → 근로보건관리규칙/근로안전관리규칙('61~'62) → 산업안전보건법('81)

나. 국내 노동·안전 법률

- (헌법)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제32조제3항)
-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며(제1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함(제76조)
 -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제15조)
- 한편,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제105조)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등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법률로서 사업주(도급인)와 발주자 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

-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 (제38조, 제39조) **등을 준수**할 의무

* (안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보건) 질식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등

- 아울러, 제조·건설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도급인)도 자신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준수(제63조)

-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67조)
- ☞ 근로자를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168조)

- 한편, 도급인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대피훈련, 혼재작업 조정 등에 관한 **고유의 의무**를 부담(제64조)

-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 자(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 제외)

* '최초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사업자 등에 시공을 도급하는 건설사업관리자(CM)등은 발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

- **안전보건대장**(제67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68조),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제72조),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제73조) 등 의무부담

-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제1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

- ① (건설공사)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② (전기공사)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등 구조물 및 도로·공항·항만·전기철도·철도신호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와 그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③ (정보통신공사) 통신·방송·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및 그 부대공사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④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⑤ (문화재수리공사)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 조치를 위한 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II.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한눈에 보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 1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법 제67조>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기본·설계·시공 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
- 2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법 제68조>
 - 분리발주 된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50억 이상의 공사 에서 작업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3 **적격수급인의 선정** <법 제61조>
 -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
- 4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법 제69조>
 - 설계도서 상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 있는 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을 금지
- 5 **공사기간 연장** <법 제70조>
 - 특정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 * 태풍·홍수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 사유 건설공사발주자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 6 **설계변경** <법 제71조>
 -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건축·토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가능
 - 발주자는 그 요청이 기술적으로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함
-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법 제72조>
 -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할 의무
- 8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 제73조>
 -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의무

[건설공사 발주자 업무 흐름도]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발주자)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비 예산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지도 계약 예산검토
설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발주자→설계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자)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발주에 따른 선임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도급계약 입찰공고 공지 	
공사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설계자→시공사)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시공사)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각 도급인에게 통지 혼재작업 조정 역할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비 계상·확정(발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지도계약 (발주자→지도기관)
시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발주자, 3개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역할 수행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공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발주자, 6개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지도 결과 이행여부 확인 (발주자)
완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대장 관리 및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확인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법 제67조>

가. 안전보건대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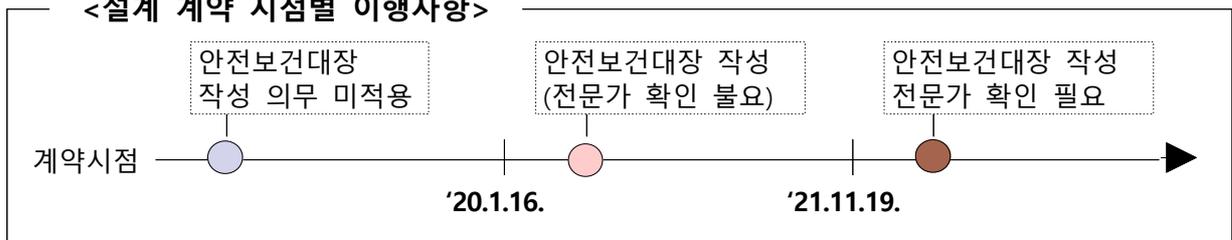
- (목적)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발주자 주도로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감소조치 마련

< 제도 연혁 >

- '19.1.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 도입
- '21.5.18.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검토 과정 도입

- (적용 시점)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 은 '20.1.16.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은 '21.11.19.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설계 계약 시점별 이행사항 >



나.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 (작성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종류 >

- 토목·건축공사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지정문화재 등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문화재수리법」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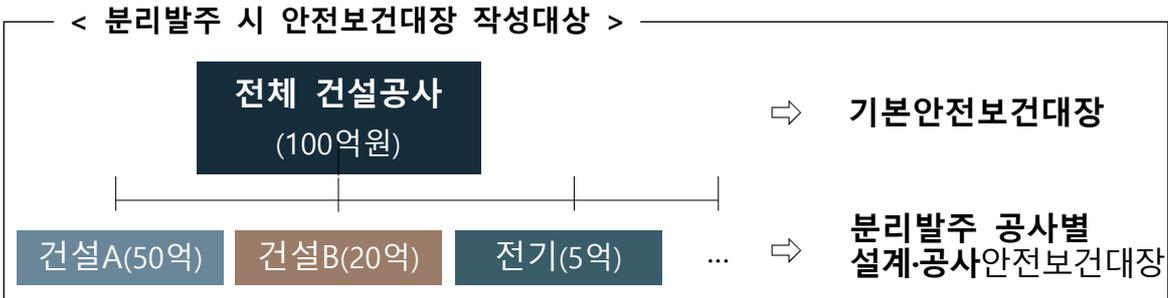
□ (총공사금액 판단)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 하나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

<안전보건대장별 작성 주체>

-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및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 설계비는 총공사금액에 미포함

-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2개 이상으로 분리발주 하는 경우, 각 분리발주된 공사별로 작성



- 다만,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 예: 건설공사 시공 계약을 매 회계연도별로 분리하여 체결하는 경우(연간단가계약), 개별 계약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작성 주체) 건설공사 단계에 따라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을 발주자, 설계자, 수급인*(시공사)이 각각 작성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 (계획단계)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발주자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

- **(설계단계)**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공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안전보건대장 작성 유의사항 >

- ▲ 분리발주의 경우, 발주자와 각 공사별 설계자, 시공사는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
 - * 설계 또는 시공계약이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분담이행 방식인 경우 각 수급인이 작성
- ▲ 다만, 기본안전보건대장의 경우 발주자가 전체 공사계획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작성 가능
- ▲ 분리발주되는 공사의 설계자가 같은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이 같은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 **(작성대상 판단 시점)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기간 중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시점부터 작성**

- **(계획단계)**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설계계약 체결 전)되는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설계 종료*시점 이전까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확정되어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실시설계의 완성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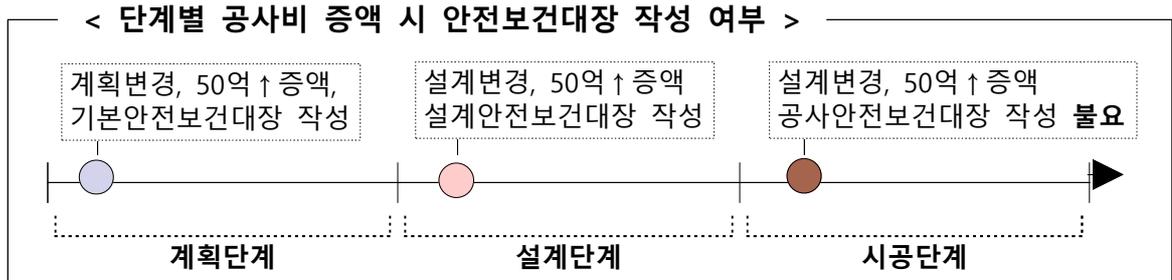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였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반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다만,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은 불필요

- **(시공단계)**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발주한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다만, 착공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부터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 → 시공 이후 총공사금액이 증가한 경우까지 작성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안전보건대장의 확인

- (적정성 확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함

<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자격요건 >

-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 건설안전기사로서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자
- ▲ 건설안전산업기사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자

-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소속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발주자·건설사업관리자 임직원 등도 확인 가능(단, 자격요건 충족 필요)

* 법 제67조제2항 및 영 제55조의2 시행(21.11.19)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된 자라 하더라도 자격요건 미충족시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불가

- 건축물의 구조, 연면적 변경 등 설계변경으로 유해·위험요인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수정하고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에게 적정성 재확인

- (이행 확인) 발주자*는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여부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건설사업관리자 포함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확인은 공사 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시행
-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확인하는 것도 가능

라.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장의 관리

- (행정협조)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을 확인한 공사현장이 취약 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 가능(서식 p.53)

*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안전대책을 합리적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공사현장

마. 벌칙 규정

- (단계별 조치 미이행) 기본, 설계, 시공 등 각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하)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미확인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자 확인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미작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미확인

- (전문가 확인 미이행)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안전보건전문가에게 받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하)

바. 기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이행 확인에 따르는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2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법 제68조>

- (선임 대상) 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복수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시공되는 건설현장



- (자격요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배치된 감리자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요건 >

-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편, 안전보건조정자의 소속·직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발주자나 특정 시공사 소속의 임직원 등도 선임 가능
- (선임 시기) 건설공사발주자는 중첩되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
 -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한 이후 각 공사의 도급인에게 통보
- (조정자의 업무) 공사 간 혼재된 작업과 그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작업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 조정 (영 제57조)
 - * 안전보건조정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 (벌칙규정)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3 **적격 수급인의 선정** <법 제61조>

- (개요) 건설공사는 발주자부터 시작하는 여러 단계의 도급계약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원·하청 건설사를 선정하여 진행
 - 따라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서는 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
 - ⇒ 건설공사발주자는 계약하려는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을 위해 '사고사망자 발생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 (사고사망자 확인) 안전관리 수준의 가장 기본적인 참고자료로써 건설업체별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확인서 제공 중
 - (발급대상)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공사실적 평가액이 확인되는 종합·전문건설업체
 - (제공정보) 해당 건설업체의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 및 사고사망자 수, 국내공사 실적액, 동종(종합·전문) 건설업체 평균사고사망만인율
 - * 전년도 사고사망자수를 집계하여 연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 (발급방법)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사가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 평가지표 홈페이지(const.kosha.or.kr)에서 신청, 온라인 발급
 - * 법인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자사 확인서에 한해 발급

< 사고사망자 발생확인서 활용방안 >

- ① 건설공사 계약 전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계약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에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요구
 - ▲ 건설공사발주자 → 원도급 건설업체 ▲ 원도급 건설업체 → 하도급 건설업체
- ② 요구받은 건설업체는 자사 확인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신청·발급
- ③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요구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 제출

<참고>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을 확인서 예시

원본문서번호 : 2023-54

종합(전문)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을 확인서

□ 건설업체 정보

건설업체명	00건설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1238145678
대표자	김안전

※ 본 내용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조회자료로 조회한 정보입니다.

□ 연도별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수, 국내공사 실적액

구분	사고사망만인율		해당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수	해당 건설업체 국내공사 실적액 (단위: 백만원)
	해당 건설업체	종합(전문) 건설업평균		
2021년	0.52	1.81	2.00	7,340,001
2020년	0.14	2.50	0.51	6,781,544
2019년	0.54	2.01	2.00	6,423,499

※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수, 국내공사실적액 등 수치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선정

□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구분(%)	해당건설업체	종합(전문) 건설업 평균	비고
3년간(2019년~2021년)	0.410	2.057	
2년간(2020년~2021년)	0.330	2.155	

신청인 : 전자서명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23년 00월 0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4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법 제69조>

- (개 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원청)은 설계도서 상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되며,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 * 공사 중 공정계획 또는 시공 방법 변경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공사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벌칙규정)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위험공법 사용 및 임의로 공법을 변경한 건설공사발주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공사기간의 연장 <법 제70조>

- (개 요)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사 유	예 시
불가항력 사유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발주자 책임	공사대금 미지급, 발주자 제공 관급자재의 품질기준 미달, 발주자의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공사 중지 등

- (방 법)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공사기간 연장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p.55)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
 - * ①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사기간 연장조치
 - * 단, 남은 공사기간 내 공사종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통보
- (벌칙규정)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법 제71조>

- (설계변경 요청) 가설구조물*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건축·토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 요청 가능

* ①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2미터 이상 흠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사 중지 또는 계획서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도 설계변경 요청 가능

- (요청 방법) 도급인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p.56)와 첨부문서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

사 유	첨부문서
가설구조물 붕괴 우려 등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및 설계의 문제점 등 변경 요청 이유서,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전문가 검토의견서, 전문가 자격증 사본, 그 밖의 설계변경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공사착공중지명령서 또는 계획변경명령서

- (설계변경 승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이 기술적으로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함

- (승인 방법)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p.57)를 건설공사도급인에 통보

- 단, 설계변경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함이 명백한 경우는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p.58)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

- (벌칙규정) 건설공사발주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을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법 제72조)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 (대 상)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만,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단가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분리발주 공사는 개별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계상방법) 건설공사의 유형 및 예정가격에 따른 계상기준*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계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4조 및 별표 1

○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원가계산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을 반영하고, 입찰 시 공고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표시 (단, 자기공사자는 제외)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공사종류	구분	대상액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는 최저기준으로서 발주자-도급인이 협의하여 계상기준표 이상으로 계상 가능

□ (벌칙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계상기준에 미달하여 계상한 건설공사발주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사용 목적)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 (사용 항목)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참조

** 각 사용품목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최근 변경 내용 >

항 목	비용내역 및 한도
스마트 안전장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20% (단, 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비용 (단, 안전관리비 총액의 10%)

- (사용내역서)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매월 작성(서식 p.59),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
- (감액·반환)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이 목적 외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사용하고 남은 잔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또는 반환요구 가능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6개월 1회 확인

* 단,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

☞ 자세한 안내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참고('22.6월)

* 고용노동부홈페이지(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색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산재예방정책과)

가. 기술지도 계약의 체결

- (적용대상) 1억 ~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 및 건축허가 대상 공사
- * 단,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제외
 - ** '22.8.17. 계약주체가 시공사 → 발주자로 변경되어 시행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는 발주자가 직접 계약체결(단, 시행일 이전 착공공사는 시공사에서 계약체결)

(계약시기) 공사 착공 전일까지

- 계약서는 시행규칙 별지 104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서식 p.60)를 사용

*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이 K2B전산시스템(k2bkosha.or.kr)에서 발급

(지도기관 선정)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 고용노동부홈페이지(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현황(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지도기관은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에 유의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의 '업무(지정)지역'을 확인

< 지방고용노동청별 관할 지역 >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아울러, 안전공단에서 고용부 위탁을 받아 매년 지도기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평가결과 확인 후 선정함이 바람직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결과(등급) 게시문 검색

- (별칙규정)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의사항)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의 사본을 첨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 불이행 현장 관리

- (불량현장 통보)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개선하지 않은 현장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 의무(지도기관→발주자)
 -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서식 p.63) 에 따라 우편·전자우편 등 통보
- 지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현장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개선을 지도함이 바람직

다. 기술지도 대금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 간 자율적으로 정함
 - 건설공사발주자 등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도기관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자체 계약규정(내규) 등에 따라 계약
- (지급방법) 기술지도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발주자는 사용 불가
→ 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기술지도에 사용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됨
 - 단, 자기공사자는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대금 지급 가능

☞ 자세한 안내는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참고('22.8월)

* 고용노동부홈페이지(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기술지도' 검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안내(건설산재예방정책과)

III. 건설현장 알아두기

1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로 구성
-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 (정의) 각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 (대상)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업무)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등

□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 (정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건설현장 각 단위공사별 직장·조장 및 반장 등

- **(업무)**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점검,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중 관리·감독

□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 **(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120억원 이상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
- **(업무)** 작업장 안전 조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

□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 **(정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상)** 총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업무)**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 **(정의)** 도급인 및 수급인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현장소장 등 전체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
- **(대상)**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업무)**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관계수급인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등

□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제75조>

- **(정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협의체
- **(대상)**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인 건설현장
- **(구성·운영)** 근로자·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2월 1회(산보위 분기 1회) 운영

2 | **작업중지**

❖ **사업주 및 해당 작업의 근로자는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중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개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 대피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벌칙)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8조제1호)

나.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근로자)** ①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②작업을 중지한 근로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 ③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④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

다. 중대재해 발생 시의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55조>

□ **(사업주)**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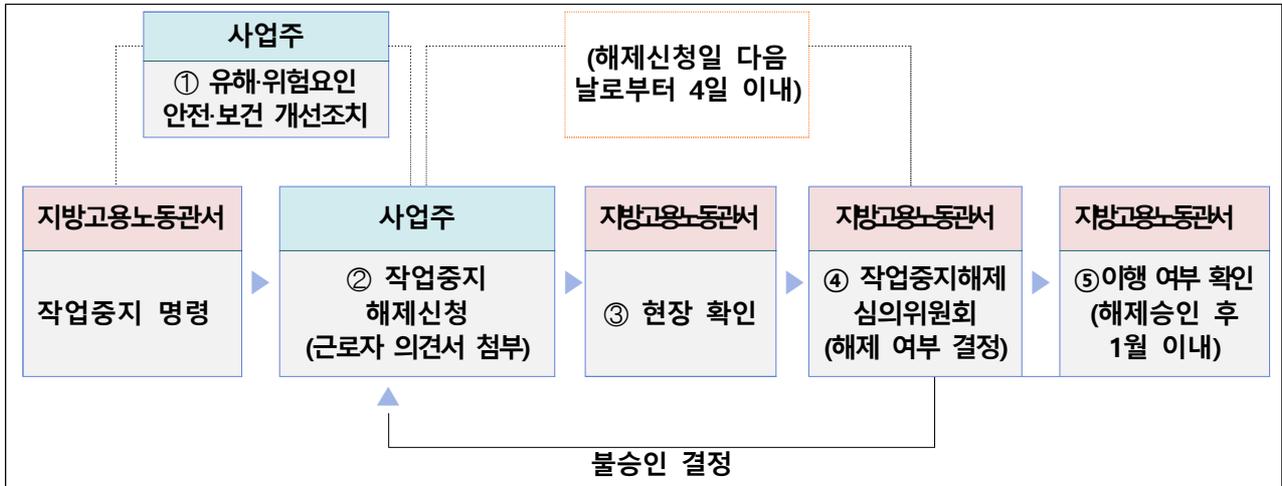
* (벌칙) 중대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8조제1호)

□ **(고용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벌칙)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8조제2호)

○ **(작업중지 해제)** 사업주는 위험요인 개선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해제 요청일 다음날부터 4일 이내) → 작업중지 해제여부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 절차 안내



- ①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 ② 사업주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조치 후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 * 만약 해제신청서 제출 이후 심의위원회 연기를 요청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사유와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연기 신청서를 제출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청받은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사전에 사업주에게 심의위원회 일정을 안내하고 출석을 요청
- ③ 근로감독관의 현장확인
 -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전 현장 방문 및 작업자 면담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여부 확인
-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해제 여부 결정
 - 사업주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보건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설명
 - 심의위원회에서는 해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 * 승인 결정이 있으면 사업주는 작업 재개가 가능하고, 불승인 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보완 필요사항 조치 후 재신청
- ⑤ 근로감독관의 안전작업 이행여부 확인
 - 작업중지 명령 해제 이후 근로감독관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개요)** 작업에 앞서 오늘 예정된 작업의 내용, 도구, 순서, 방식 등을 확인하면서 예상되는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간략한 회의

* TBM의 뜻: 회의장, 사무실 등이 아닌, 공구상자(Tool Box)가 있는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에 Tool Box Meeting이라 불림

〈 TBM 실시 예시 〉

▲ **작업내용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트럭에 있는 나무를 땅에 심는 작업**

- ① 오늘 할 일과 도구를 확인
- ② 작업 방식과 순서 정하기
- ③ 필수안전조치 생각하기
 -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 설치'
 - '인양하는 나무는 두군데 이상 단단히 고정'
 - '인양되는 나무 아래부분에 작업자 출입 금지조치'

□ **(필요성)** 미국의 심리학자 A.D. Swan에 의하면 인간은 지시에 대한 위반, 절차 무시, 망각, 작업순서 생략 등 실수(Human Error)를 범할 수 있음

○ 절차 무시, 망각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앞서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

□ **(방법)**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장소에 모여 당일 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을 예지하고, 개선방법을 모색

○ **관리자**는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으며, 모든 작업자가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안전수칙을 교육

○ **작업자**는 본인이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한번 더 되새기며, 주변 동료의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사항을 서로 확인

〈 효과적인 TBM 실시방법 〉

①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큰소리로 외치기**

→ 인양 중인 중량물 밑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움직이는 굴착기 옆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

② **수시로 실시하기**

→ 아침 작업개시 전은 물론, 휴식 후 작업재개 전, 굴착기·트럭 등 새로운 기계·장비 반입 전, 새로운 작업 시작 전에도 실시합니다

4 현장 안전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

- (목적) 1~2일 내 진행되는 작업에서의 위험요인을 도급인이 확인
- (참여자) 도급인*
 - * 원도급업체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시기) 2일 1회 이상
- (방법) 도급인이 각 공정 및 작업별 위험요인 개선 여부 확인
 -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됨

□ 합동안전점검

- (목적) 향후 1~2개월 내 진행될 공정의 위험요인을 도급인·수급인이 함께 확인하여 개선대책 마련
- (참여자)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과 각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1명 이상
 - * 원도급업체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각 하도급업체 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시기) 2개월 1회 이상
- (방법) 각 수급인은 향후 공정 계획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사항 공유, 도급인은 각 관계수급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험요인 개선방안 마련
 - 도급인은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획하고, 수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 작업 안전점검

- (목적) 작업 직전 최종적으로 위험요인 개선 여부를 확인
- (참여자) 관리감독자
- (시기) 각 작업 실시 전
- (방법) 각 세부작업 별 점검,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 관리·감독

5 아차사고 신고제도

- **(아차사고)**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 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
 - 수차례의 아차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 재해로 연결

하인리히 법칙(1:29:300 법칙)

- ✓ 1개의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만한 사고(아차사고)가 300번 있었을 것이라는 법칙
- ✓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지할 때 발생하므로 문제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

- **(아차사고 신고)** 아차사고 발생 시 작업자는 관리감독자에게,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현장소장 등에게 신고

언제	'22.5.30. 15:00경	위험도	상 / 중 / 하
어디서	5층 엘리베이터 피트 부근		
무엇을 하다가	해체한 거푸집을 매고 이동하던 중		
어떤 행동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각재에 발이 걸려		
어떻게 될 뻔	엘리베이터 피트로 추락할 뻔		
필요한 조치	엘리베이터 피트 단부 안전난간설치, 바닥 자재 정리		
조치예정일	2022.5.30. 16:00 경 완료예정	보고자	관리감독자 000

< 아차사고 위험도 분류기준 예시 >

위험도	위험정도	조치
상	중대재해가 예상	- 작업 중단 후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
중	재해발생 시 중상이 예상	- 임시 조치 후 안전대책 수립·시행
하	재해발생 시 경상이 예상	- 현 상태 작업은 가능하나, 교육 등 시행

* 중상 : 하루 이상 입원 및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이나, 신체활동 부분을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경우
 ** 경상 : 사망, 중상을 제외한 부상

6 위험성 평가

- (개요) 사업장에 산재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주요한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안전조치를 통해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
- (방법) 도급인은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 등을 지원, 수급인은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수급인이 위험성 평가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
 -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야 하여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
- (종류) 최초 위험성평가, 수시위험성평가, 정기위험성평가
- (절차) ①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②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 ④추정한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위험성 인지 여부의 결정 → ⑤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⑥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3년간)

〈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 예시 〉

위험요인	제거 및 대체	공학적 통제	관리적 통제	개인 보호구
개구부 (추락)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안전난간 또는 덮개 설치	'추락 위험' 표지판 설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건설기계 (부딪힘)	-	측·후방 경보장치설치	작업반경 출입금지	안전모 착용 등
용접불티 (화재)	설비 연결방식을 용접 대신 조립 방식으로 설계	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작업허가제 도입 주변 가연물 제거	보안경 착용 내화복 착용
밀폐공간 (중독·질식)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환기·배기장치 설치	출입금지 표지설치 유해가스 농도측정 감시인 배치	송기마스크

7 안전보건교육

- (목적)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근로자 스스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
- (기초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의무(4시간)
 -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 시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

〈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내용 〉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이상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 제외)	2시간 이상	· (공통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 (개별내용) 유해·위험작업별 교육내용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	8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건설공사 종류 및 시공절차 ·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근로자 권리·의무

- (특별교육)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에 채용되거나 작업내용이 해당 작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 건설현장의 주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

-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및 암석굴착
-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설치·해체,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 콘크리트 인공구조물(높이 2미터 이상) 해체 또는 파괴작업
-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가연물이 있는 장소의 화재 위험작업
- ▲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 ▲ 1톤 이상의 크레인 사용 작업, 건설용리프트·곤돌라 사용작업
- ▲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석면 해체·제거작업 등
- ▲ 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IV. 주요 질의회신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 판단

Q.1-1 법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여부

'17.12월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2.7월 착공 예정이었던 건설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22.8월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는 개정 법률 시행일('20.1.16.)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여되므로,
 - 기본계약('17.12월)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새로운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임

Q.1-2 설계비의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자재계약비용, 설계비용, 공사계약비용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기준 총 공사 금액에 포함되는지

-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의미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을 의미
 - * 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 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금액
- 설계비용은 시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Q.1-3**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의 개념**

승강기를 1대씩 순서대로 총 25대를 교체하는 경우(1대당 교체비용 2.4억),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란 도로유지 보수 단가계약공사, CATV 가입자 인입선 공량단가 계약공사 등 일정기간에 대한 총액을 계상하고 시간과 장소가 분리된 개별공사를 각각 시공하는 단가공사를 의미
- 따라서 이 경우 '승강기 교체'라는 하나의 공사로서 단가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 공사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에 해당함

Q.1-4**총공사금액 개념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여부**

1.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비용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2. 자재구입비용 계약에 대해 별도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용이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에 해당한다면 총공사금액에 포함됨
- 관급자가 관급자재를 설치하는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임

Q.1-5**총공사금액 증액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여부**

1. 다수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서 설계는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나 공사는 역 단위로 계약 및 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여부
2.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는 총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단계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와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으로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여부

-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 따라서 지하철 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공사의 경우, 설계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이므로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면 됨
-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단계부터 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공사에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설계 단계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나,
 -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의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에까지 위험요인의 예상과 그에 대한 사전적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Q.1-6 공사설계 과업 중지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시기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던 중 과업이 중지된 상황에서 설계사가 기본설계만을 바탕으로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발주자에게 제공하거나 추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닌지

- 설계단계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설계도서가 작성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최종적으로 작성이 완료된 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될 것임
- 따라서 기본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없으나, 향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해당 설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Q.1-7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질의

건축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으로 소방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갈음할 수 있는지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축공사, 소방공사를 포함한 전체 건설공사의 계획을 기초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후 각 공사별 설계자에 제공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면 될 것임

Q.1-8 안전보건대장 작성자의 자격요건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의 법적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하여야 함

Q.1-9**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업무수행자의 자격**

1. 건설공사의 실무경력이 없는 발주처 직원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안전보건전문가의 자격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3. 건설안전분야 자격을 가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통상 종합건설사)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자의 자격 등에 관한 제한은 없음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함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소속, 지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더라도, 같은 법 제55조의2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Q.1-10**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질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내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내용 작성에 대한 특정 지침 또는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는지

- 개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주체 등을 특정 지침을 통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감소대책을 설계조건으로 작성하면 됨

Q.1-11**기본안전보건대장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작성 방법**

1. 계획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
2. 기본안전보건대장 내 설계조건에 근로자의 안전과 관계된 사항이 아닌 조건을 반영해도 되는지

-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주요공종에 대해 공사원가계산서, 공정표 등의 공사계획서를 참고하여 계획된 공사예정금액과 공사예정기간을 토대로 적정성을 판단하면 되며,
 -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업안전과 관계없는 설계조건까지 반영할 필요는 없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및 이행확인

Q.1-12**안전보건조정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A건설공사의 안전보건조정자가 동일한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한 다른 B건설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단, B건설공사는 단일공사로 별도의 안전보건조정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함
 - 따라서 B건설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발주자가 동일한 A건설공사의 안전보건조정자라는 이유만으로 B건설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할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움

Q.1-13**외부 안전보건업체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확인 의무를 외부 안전보건업체에서 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 또는 외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이행 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같은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해당 자격요건을 가진 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Q.1-14**공사안전보건대장 변경 시 적정성 확인에 관한 질의**

시공 중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때마다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전문가에게 다시 받아야 하는지

- 건축물의 구조나 연면적 변경 등 설계변경으로 유해·위험요인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수정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할 것이나, 유해·위험요인의 추가·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의 내용변경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임

Q.1-15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에 관한 질의

1.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의 부담 주체
 2.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관리 의무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있음
 -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Q.1-16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질의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누락한 경우 법 위반사항인지

-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Q.1-17 자기공사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자기공사자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위법인지

-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동일한 자기공사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주체와 이행여부 확인자가 동일함

2 안전보건조정자

Q.2-1 안전보건조정자의 소속

시공사 소속 직원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하여도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소속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시공사에 소속된 사람이라도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선임·지정할 수 있음
-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춘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지정하면 되며, 현장 상주 의무 및 소속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Q.2-2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방법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두 개로 분리발주된 공사의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의무

- 안전보건조정자는 서로 다른 건설공사도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 분리 발주된 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할 의무는 없음

Q.2-3 감리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타 현장 감리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 법령에서 정하는 감리자 중 해당 사업장의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이 가능함
 - 타 현장의 감리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어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 수행이 곤란하므로 선임·지정이 불가능함

Q.2-4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시기 및 방법

발주처가 분리발주한 공사A('22.7월~'26.1월)와 공사B('22.5월~'23.1월)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시기

1. 공사B를 공사A 시공업체의 하도급으로 진행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여부
2. 분리발주 된 두 개의 공사 중 하나의 공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다른 공사가 착공되어 실제 두 공사가 겹치지 않아 혼재 작업이 없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의무
3.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필요한 서류 및 신고서 제출 여부
4. 안전보건조정자 및 미선임 시 처벌기준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각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며 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하여, 이때 착공일은 실제 공사가 착공되는 날을 의미**
 - 따라서 분리 발주된 공사A와 공사B의 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이라면, **혼재작업이 진행되는 기간('22.7월~'23.1월)동안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함**
- 귀 질의에서 전제하는 바와 같이 분리 발주된 공사가 A와 B만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공사B의 시공에 대한 계약을 공사A 시공업체의 하도급 형태로 체결한다면, 건설공사발주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만 발주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은 아님
- 분리 발주된 공사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공사가 착공되어 혼재된 작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선임 또는 지정하여 각 공사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임서 등의 제출의무 및 업무수행 서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된 바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5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건설공사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Q.3-1 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조기준공이 필요하여 동절기 작업불능기간 공사추진, 인적자원 투입상향 등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8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가열난방, 보온, 보양 등 작업기온을 유지토록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당초 공사기간 산정 시 포함된 작업불능 기간을 제외

** 작업인원을 증원투입하여 공사량 조기달성이 가능하므로 당초 공사기간 산정시 인력 균배도를 상향하고 그에 따른 작업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공사+안전)를 추가배치하여 공사관리 촉진

- 「산업안전보건법」제69조에 따라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함으로써 인해 근로자들이 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공사 중 공정계획의 변경이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 설계변경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기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Q.3-2 공법 변경 시 절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69조에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민간공사에서 공기단축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공기단축과 공법변경 시 건축주에게 벌칙이 있는지
3. 공기단축과 공법변경이 금지된다면 설계의 경제성 검토 관련 법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1. 질의 1

- 공사기간 단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대상이 아님

2. 질의 2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1조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9조제2항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하거나 공법을 변경하여 근로자들이 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기간 또는 공법을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 공사 중 공정계획 또는 시공방법의 변경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기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4 공사기간의 연장

Q.4-1 공사기간 연장 사유 해당 여부

1. 건설공사 도급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승인 변경
(건설공사 기초 계획변경, 현장 지반여건 변경)
2. 폭염, 노조파업
3.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발령, 인근학교 시험기간 작업중지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아래 사유 중 하나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태풍·홍수 등 악천 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이 때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란 자연재해, 전쟁 등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을 의미하며,

-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란 착공 지연이나 시공 중단의 사유가 건설공사발주자의 인·허가 문제, 예산 미확보 등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귀 질의의 각 상황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나, 건설공사 발주자의 명확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공기 연장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서도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람

V. 주요 서식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서식 1

기본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1)

기본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2. 현장 제반 정보

공사규모 (공사종류, 연면적 등)	
위 치 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인접 건축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1) 공사금액의 적정성

주요공종 공사금액	적정성 여부

※ 공종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부대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기재(이하 같다)

2) 공사기간의 적정성

공종	공사기간	적정성 여부

3)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No	유해·위험요인	설계조건

4.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5.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대장 작성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2)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1) 위험성 평가 기준(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허용 위험성 기준)

(1)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2) 허용 위험성 기준

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작성 대상 여부	근 거	작성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배치 대상 여부	배치 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대상 여부	근거	실시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계상금액	계상 근거

8.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9.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 관리기술 (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주요 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NO*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시공사 이행계획

※ 설계안전보건대장 3.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내용 참조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해당 시 작성)

- 1)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2) 확인결과

No.	점검자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1				
2				
3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내역

일자	당초 계상금액	변경 계상금액	실행금액	변경사유

5.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해당 시 작성)

- 1) 계약여부 (대상, 비대상)
- 2)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No.	지도자	지도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1				
2				
3				

6.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7.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3.1.30.)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3.2.10.)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23.1.30.)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23.2.10.)
첨부서류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		

2 공사기간의 연장요청

서식 1

공사기간 연장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건설현장 개요	건설업체명	공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기간 연장 요청사항	연장 일수	
	변경 공사기간	

공사기간 연장사유	
--------------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 사실 증빙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3 건설공사 설계변경

서식 1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건설현장 개요	건설업체명	공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주자	

설계변경 요청사항	대상공사
	변경내용

검토자	성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자격	
	소속	(전화번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p>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나.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다.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자격증 사본 라.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 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서류</p>	수수료 없음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수급인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대표	

설계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도급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

수급인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대표자	

설계변경 요청사항	
--------------	--

불승인 사유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도급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서식 1

사용내역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대표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주자		누계공정률	%
계상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5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 총괄·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유형 (공공)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국가기관 (민간) []기업 []개인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연락처
--	--	-----------------------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소재지 담당자	대표자 전화번호
----------------------	------------------	-------------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건설공사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	---------------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 총괄·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기업 []기타 국가기관 (민간) []기업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건설공사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 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실시 일자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